

2024년도 일한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사업

(학부1년코스) 모집요강

일한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사업(학부 1년 코스)은 소정의 일본대학에서 1년간 일본어 능력 및 일본사정, 일본문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을 외국인 유학생(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래

1. 일한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사업이란?

1998년 일한양국정상이 발표한 일한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일한 파트너십' 및 공동선언서의 부속서에 따른 정부간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한 '일한이공계 학부유학생 사업'을 발전시킨 형태. 본 '일한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간의 상호교류 확대와 일본에서의 연구를 통해 일본과 한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2. 채용 예정 인원 : 25명 정도

3.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본과 자국의 가교가 되고, 양국 나아가 세계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 (1)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일 것. 신청 시에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일본 이외에 생활 거점을 둔 일본 국적 소지 이중 국적자에 한해 일본 입국 전(배치 대학에서의 학적 등 발생 시)까지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일본 국적을 이탈할 예정인 자는 대상으로 한다. 제1차 선고는 응모자가 선택한 국적국 소재의 재외공관에서 실시한다.
- (2) 연령 : 1994년 4월 2일부터 200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 (3) 학력 : 하기 ①~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① 원칙적으로 일본 입국 및 귀국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학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자.
 - ② 일본어·일본문화에 관한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자. 또한, 일본어·일본문화 관련 분야 이위를 주전공으로 하는 자 중 학습의 일환으로 일본의 제 사정(공학, 경제, 농학, 건축, 미술 등)을 학습하는 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2024년 9월 1일 시점에서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 학습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자 (다른 대학에서 일본어·일본문화 학습력이 있고, 합산하여 일본어·일본문화 학습기간이 통상 1년을 충족하는 자는 반드시 일본어·일본문화 학습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할 것).
- (4) 일본어 능력 : 일본 대학에서 일본어로 이수 가능한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
- (5) 건강 : 소정의 건강 진단서 양식에 따라, 일본 유학과 관련해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6) 출발 시기 : 원칙적으로 연수 코스 시작 2주 전부터 코스 개시일 사이에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날짜(원칙적으로 9월 또는 10월)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 자. 본인의 사정으로 소정의 기일 이외에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도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부성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대학이 지정된 날짜의 최종일까지 일본에 입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을 사퇴할 것.
- (7) 비자 취득 : 일본 입국 전에 주한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신규로 취득하고, 신규 취득한 '유학'의 재류 자격으로 입국할 것. 따라서 이미 다른 재류 자격('영주자', '정주자'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학' 시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일본에 입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비 외국인 유학생 신분인 경우라도 후 다시 '영주자' 또는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신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 새로 '유학'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는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므로 주의할 것.
- (8) 대상 외 :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대상 외로 한다. 채용 이후 편명된 될 경우에는 사퇴할 것.
 - ① 현역 군인 또는 군속 자격을 가진 자.
 - ② 문부과학성 및 수용 대학이 지정된 기일까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자.
 - ③ 과거에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일본 입국 후 사퇴하고 귀국한 자도 포함). 다만, 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유학생 수용 촉진 프로그램 (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for Privately-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는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음.
 - ④ 일본 정부(문부과학성)의 장학 제도 중 별도의 2024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대학추천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포함)과 중복으로 신청한 자.
 - ⑤ 신청 시 이미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또는 본 장학금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 외국인유학생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 단, 현재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사비 외국인유학생이라도 신청 시점에 장학금 지급 개시 전에 수료하여 귀국할 것이 확실하며, 새로 '유학'의 재류 자격을 취득해 일본으로 입국 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⑥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한국 정부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수급 예정인 자.
- ⑦ 신청 시 이중국적자로 일본 입국 시(수용대학에서 학적 등 발생 시)까지 일본 국적 이탈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⑧ 제1차 전형 필기시험에서 시험감독원이 금지한 부정행위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한 것으로 판명된 자.
- ⑨ 일본 입국 후 재류자격을 '유학외의 재류 자격으로 변경한 자.

(9) 장학금 지급 종료 후 귀국·복학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달 이내에 귀국하여 일본 입국 시점에 재학 중이던 한국 대학 학부에 복학하여 일본어·일본문화 학습을 지속 해 갈 것이 확실한 자. 단, 2024년도 모집자부터 복학 후에도 더블·디그리·프로그램, 조인트·디그리·프로그램의 참가 등의 방법으로 일본국내에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 **상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급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장학금의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종료 후 귀국·복학이 불확실한 자는 지원하지 말 것.**

(10) 기타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서, 널리 지역 학교와 지역의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의 상호 이해에 공헌하는 동시에 수료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수료 후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한국에 귀국 후에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하는 등, 일본과 한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 자를 채용한다.

4. 대학배치 및 대학에서의 연수코스

- (1) 연수는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코스 가이드』에 게재되어 있는 대학의 연수 코스 중에서 실시한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또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열람 가능)
- (2) 수용 대학은 문부과학성이 후보자 신청서에 기재된 일본어 능력, 필기시험 결과 및 전문 연수 희망 등을 감안하여 대학과 협의해 결정한다. (심사 과정에서 대학으로부터 신청자 본인에 대한 직접 조화를 할 경우도 있다.) 또한 본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소정 기간 내(2024년 8월15일까지)에 수용대학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는다.**
- (3) 대학에서의 연수는 일본어로 실시한다.
- (4)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 연수는 각 대학이 개설하는 코스의 연수 목적에 따라 (a)일본사정·일본문화에 관한 연수를 주로 하고, (b)일본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수를 주로 한다. 연수 내용은 대학별로 다소 다르나 일본사정·일본문화 및 일본어 관련 특별 강의나 전문 실습을 이수하는 것 외에도 각 학생의 전공에 따라 관련된 학부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다.
- (5) 수용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가 주어진다. 단, 이 제도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연수 코스 수료 후에는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달의 월말까지 귀국하여 일본 입국 시점에 재학 중이던 대학 학부에 복학해야 한다. 단, 2024년도 모집자부터 복학 후에도 더블·디그리·프로그램, 조인트·디그리·프로그램의 참가 등의 방법으로 일본 국내에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 **상기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급개시일로부터 소급해 장학금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다.**

5. 장학금 지급기간

2024년 10월(또는 연수코스 개시월)부터 1년 이내로, 각 대학의 연수코스 수료에 필요한 기간. 학기개시일(재적개시일)이 2024년 9월 1일일 경우, 장학금 지급기간 개시월은 2024년 9월이 된다. 단, 학기개시일(재적개시일)이 2024년 9월 2일 이후일 경우, 장학금 지급기간 개시월은 2024년 10월이 된다.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장학금 등

- (1) 장학금
월 117,000엔을 지급한다. 특정 지역에서 수학·연구하는 자에 대해서 월 2,000엔 또는 월 3,000엔을 월 단위로 가산한다. 또한 일본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각 연도별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2) 교육비
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문부과학성이 부담한다.
- (3) 여비
①도일 여비

문부과학성은 상기 「3. (6) 출발시기」에 지정하는 소정의 기간 중에 도일하는 유학생에게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한국 내 국제공항(서울[인천, 김포], 부산, 대구, 제주 등)에서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는 국제 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으로 한다. 또한,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국내 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 국내의 여비(항공기의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품·별송 수하물 관련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하되, 일본 입국 전 한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신청서의 「일본 입국 전 주소」란에 기재한 주소를 「거주지」로 인정하며,

가까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준비한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사정에 의해 상기 「3. (6) 출발 시기」에 지정한 소정의 기간 이외에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도 입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귀국 여비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연수코스를 수료하고, 상기 「5. 장학금 지급 기간」에 정해진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달 월말까지 귀국하는 자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항공권을 지급한다. 항공권은 수송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유학생이 돌아가는 한국 내 국제공항(서울[인천, 김포], 부산, 대구, 제주 등)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교부 후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일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한국 국내의 여비(항공기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품별송 수하물에 관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본인 사정 및 아래의 「7. 장학금 지급 중지 사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달 이전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월말까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거나, 그 달 내에 한국으로 귀국했다라도 일본 입국 시점에 재적했던 한국 대학의 학부로 복학하지 않을 경우 귀국 여비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2024년도 모집일부터 복학 후에도 더블·디그리·프로그램, 조인트·디그리·프로그램의 참가 등 수단에 있어서는 일본국내에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국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7. 장학금 지급 중지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①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 ③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에 처해졌을 때.
- ④ 대학의 학칙 등에 준거한 징계 처분으로서 퇴학정학·훈고 및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혹은 제적되었을 때.
- ⑤ 대학에서의 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수용대학의 연수 코스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⑥ 「유학」의 재류자격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했을 때 또는 「유학」의 재류 자격을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했을 때.
-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 특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을 지급 받았을 때.
- ⑧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달의 월말까지 귀국하여 일본 입국 시점에 재학 중이던 한국의 대학 학부에 복학하지 않았을 때 (적절한 재류자격 취득을 전제로 복학 후에도 더블·디그리·프로그램, 조인트·디그리·프로그램의 참가 등 수단으로 일본 국내에서 학습을 계속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선발

- (1)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는 서류 심사, 필기시험(일본어) 및 면접시험에 의한 제1차 선고를 실시한다.
- (2) 제1차 전형의 결과 통보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짜로 하고, 합격, 불합격 여부의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1차 전형에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 (3) 제1차 선고 합격자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문부과학성에 추천한다. 문부과학성은 재외공관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제2차 선고를 실시하여 제2차 선고 합격자를 선정한다.
- (4) 최종 선발 결과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짜에 통보한다. 선발된 자에게는 수용 대학도 함께 통지한다. 수용대학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정의 기간 내(2024년 8월 15일까지)에 수용대학이 결정하지 않을 경우 채용하지 않는다.

9. 신청 서류:

응모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No.	서류 종류	원본 1부	사본 1부	비고
①	신청서	○	△	2024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4)
②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	○	△	2024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5)
③	재적 대학의 학업 성적 증명서	○	△	재적 학년까지의 모든 학년 (주6)
④	일본어·일본문화 학습기간이 통상 1년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상기 ③에서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 학습기간이 통상 1년이상임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출. 해당 과목에 표시를 해서 제출할 것.
⑤	재적 대학의 재학증명서	○	△	(주7)
⑥	재적 대학 학과장 또는 지도 교수의 추천장	○	△	양식은 자유. (샘플 양식 있음.) (주7)
⑦	건강 진단서	○	△	2024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8)
⑧	일본어 능력 자격 증명서	△	●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자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사본 제출. (주9)

- (주1) ○의 서류는 필수 제출. ●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할 것.
- (주2)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다른 언어로 된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주3) 모든 서류의 우측 상단에는 반드시 ① ~ ⑥까지의 신청서류번호 (상기 표의 No. 참조)를 기재할 것.
- (주4)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해 선명한 화질로 **사진 전용 용지**에 인쇄한 것으로 하고, 크기는 4.5×3.5cm, 상반신·정면·탈모할 것. 또한, 사진의 뒷면에 국적 및 이름을 기입할 것. 신청서 데이터 파일에 디지털 화상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인쇄하는 것은 가능.
- (주5)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코스 가이드』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또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열람 가능)에서 희망 대학을 선택하여, 목차에 적힌 대학 번호와 같이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에 기입한다.
- (주6) 일본어·일본문화 관련 이수과목 개수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할 것. 일본어 또는 일본문화 관련 학습기간이 통산 1년이 넘지 않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주7) 본 프로그램은 3. (9)의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귀국복학이 조건이므로 재적대학의 장 또는 지도 교원과 귀국 후 계획을 신청 단계부터 협의할 것.
- (주8) 건강진단서 제출 후 건강 상태에 변화(라이프플랜과 관련된 중대한 변화를 포함한다)가 생긴 경우, 수용 대학이나 일본 의료기관의 수용 체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신속히 재외 공관에 정보를 공유할 것.
- (주9)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레벨, 점수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서 「19. 일본어 능력(자격)」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증명서를 제출할 것.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인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레벨, 점수 등)이 포함된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할 것. 증명서는 대사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만 인정함.

10.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해 채용 통보 전후 언제라도 입국 일정이 변경 장학금의 취소 또는 본 모집 요강의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문부과학성 또는, 외무성(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을 포함)의 합리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유로서 천재지변, 정부(지방정부를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동일) 또는 정부 기관의 행위(감염증에 관한 일본 정부 또는 각국 정부의 출입국 제한, 입국 제한 등의 국경 방역 대책을 포함), 법률, 규제 또는 명령의 준수, 화재, 폭풍우, 홍수 또는 지진, 전쟁(선전포고의 유무와 상관 없음), 반란, 혁명 또는 폭동 또는 파업 또는 폐쇄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1. 주의사항

- (1) 일본 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 간 법 제도의 차이, 대학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일본 입국 후, 장학금 지급까지 한 달~한 달 반 정도 소요되므로, 당장에 필요한 생활 자금으로 최소 미화 약 2000달러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장학금은 입국 후에 나면, 각자가 개설한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이 계좌 이외의 계좌로는 대한 장학금을 송금 하지 않는다.
- (4) 건강진단서 취득 등에 있어, 결핵 등의 감염성이 있는 경우가 판명될 경우, 일본 입국 전까지는 반드시 치료를 할 것. 일본 입국까지 완치하지 않을 경우, 일본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 (5) 일본 입국 후,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6) 일본 입국 후 마이넘버카드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숙소에 대하여
 - ① 대학의 유학생 숙소

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원할 경우 일정의 조건하에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입실자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숙소에 관한 제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연수 코스에 따라서는 일본 입국 전에 숙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코스 가이드에서 확인할 것.
 - ② 민간 숙소 등

상기의 숙소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기숙사나 민간 숙소에 본인 부담으로 입주하게 된다.
- (8) 연수 종료 후, 재적하는 한국의 대학에서 단위 인정의 기부에 대해서는 재적 한국 학교에 직접 문의할 것.
- (9) 채용된 경우, 채용자에 관한 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대학연구과 학부, 전공분야, 재적기간, 수료 후의 진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사업 (유학 중의 지원, 유학종료자의 팔로우업, 유학생제도의 개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 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채용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 이외)는 일본 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용 촉진을 위한 홍보 자료 등에,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비 유학생 경험자를 소개하기 위해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국비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채용이 결정된 때에 제출해야 하는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정한 서약서'에 이러한 취급방침에 대해 동의를 구한다. 본 취급에 대해 승낙하는 자를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채용한다.

- (10) 일본 상륙을 위한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채용하지 않는다.
- (11) 모집요강, 신청서 양식의 병기된 영문은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영문 표현이 일본어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 (12) 이 모집요강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나 그 외의 의문점이 있으면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 (13) 본 모집요강이에 정해진 것 이외 국비 외국인 유학생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주의: 대한민국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별첨 2] 2024 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 절차 및 선발 일정(학부 1년 코스)에 대한 안내를 확인 후 응모신청 할 것 또한, 모집요강의 경우 일본어 요강을 기준으로 함.**